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43
----------	-------

발의연월일 : 2026. 7. 20.

발 의 자 : 전종덕 · 이수진 · 정혜경
손 솔 · 용혜인 · 김준형
송옥주 · 윤종오 · 윤준병
김종민 · 허성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은 고용, 금융, 행정,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되며 국민의 기본적 삶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의 도입·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의 참여 보장이 미흡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발생 시 효과적 권리구제 수단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제사회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권 보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존중, 차별 금지, 감독체계 구축 등을 권고한 바 있음.

현행법은 인공지능 윤리원칙과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 방지 및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사전적·사후적으로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311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활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선택·판단 및 결정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함에 있어 그 영향이 미치는 사람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별·종교·장애·연령·출신지역·신체조건·피부색·성적 지향·사회적 신분 등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있어 인권적 가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여야 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하여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한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311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략) <u><신설></u> <u><신설></u>	법률 제21311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활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선택·판단 및 결정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④ <u>누구든지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함에 있어 그 영향이 미치는 사람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별·종교·장애·연령·출신지역·신체조건·피부색·성적 지향·사회적 신분 등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